

2024년도 경상북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4년도 재지정 및 고도화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개요

- 가. 공고기간 : 2023. 10. 27.(금) ~ 11. 10.(금)
- 나. 접수기간 : 2023. 10. 27.(금) ~ 11. 10.(금) 18:00까지(휴일 제외)
- 다.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 모집유형 및 지원 내용

모집 구분	지원(보조금) 내용	자부담 출자
재지정 마을기업(2회차)	3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 필요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이상)
고도화 마을기업(3회차)	2천만원 한도	"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단체가 신청한 경우 우선선정 혜택 적용 가능

2 신청단체 요건

가. 신청단체 최소 요건

신 유형	청 형	추 진 단 계	의 무 교 육 수 이	조 직 형 태 및 출자자 구성	수 익 사 업	자 부 담 자
재 지 정 (2회차)		1회차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신청 당해 연도에 <u>전문교육을</u> 이수하여야 함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자로 참여한 ' <u>법인</u> ' [출자자 10인 이상 권장]	신청 사업은 반드시 지역에 소재한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어야 함	신청 보조금의 20% 이상 현금출자 필요 (청년형은 10% 이상)
고 도 화 (3회차)		2회차까지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	& 전체 출자자 중 지역주민이 70% 이상 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주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 고도화 신청단체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심사 시 가점 혜택 부여

나. 마을기업 요건(지정 요건) ※ [붙임 2] 참고

- 1)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요건(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을기업 요건 충족여부 및 그 정도를 심사하여 선정(지정) 함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참조

- 1) 신청유형별 사업신청서(서식 1-2, 1-3)
-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 2)
-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 4) 기타 사업신청 관련 각종증빙 서류

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세부내용	추진 주체
모집공고	'23. 10. 27. ~	○ 마을기업 모집공고	경북도
		↓	↓
신청접수	'23. 10. 27. ~ 11. 10.	○ 마을기업 신청접수(재지정·고도화)	시·군
		↓	↓
현지조사 및 도 추천	~ '23. 11. 17.	○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적격한 단체 경북도로 추천	시·군 → 경북도
		↓	↓
도 심사	'23. 12월 중	○ 도 심사위원회 심사 : 대면심사 ○ 지정요건 충족여부, 사업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경북도
		↓	↓
행안부 추천	~ '24. 01. 12.	○ 행안부 추천 : 관련 서류 제출	경북도 → 행안부
		↓	↓
행안부 심사	'24. 1월 말	○ 최종심사 ○ 지정결과 발표 및 통보	행안부
		↓	↓
약정체결	'24. 2월 말	○ 지정 결과 통보 후 약정체결	시·군 ↔ 마을기업

* 심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통보

5 마을기업 유형별 심사기준

가.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 「2024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054-880-2623)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센터(☎053-944-4002),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270-3922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4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760-7972	영양군	농촌경제과	680-6323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420-6707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6233	청도군	경제산업과	370-6235
구미시	새마을과	480-6822	고령군	인구정책과	950-658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43	성주군	기업경제과	930-671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47
상주시	미래정책실	537-7141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767	봉화군	인구전략과	679-6187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3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473
의성군	청년정책과	830-6506	울릉군	경제투자유실	790-6273

[붙임 1] 청년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 **청년 마을기업**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 중 청년이 일정비율(30% ~ 50%) 이상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청년 마을기업’으로 지정

**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라도 ‘공동체성’의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청년’의 기준 :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에 따라 ‘만 19세 ~ 만 34세’ 적용

**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회원 비율 적용 기준 : 지역여건(연령별 인구분포,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의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청년회원 비율을 30% ~ 50% 차등 적용

시·군별 청년(만19세~만34세) 인구비율	청년회원 비율 적용기준	지역주민 비율
15% 미만	30% 이상	50% 이상
15% 이상 20% 이하	40% 이상	"
20% 초과	50% 이상	"

○ **경상북도 시·군별 청년회원 비율 적용 기준**

** 2022년 12월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적용*

시·군	청년인구 비율	청년회원 비율
포항시	16.7%	40%
경주시	15.1%	40%
김천시	15.4%	40%
안동시	15.4%	40%
구미시	20.7%	50%
영주시	13.6%	30%
영천시	13.8%	30%
상주시	11.7%	30%
문경시	12.6%	30%
경산시	20.3%	50%
의성군	8.5%	30%

시·군	청년인구 비율	청년회원 비율
청송군	9.4%	30%
영양군	9.5%	30%
영덕군	9.4%	30%
청도군	9.1%	30%
고령군	10.9%	30%
성주군	10.7%	30%
칠곡군	15.7%	40%
예천군	12.1%	30%
봉화군	8.6%	30%
울진군	13.4%	30%
울릉군	14.0%	30%

※ **청년 마을기업 신청 시 유의 사항**

- 청년 마을기업으로 재지정, 고도화에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 마을기업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 비율과 청년회원 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재지정, 고도화를 신청하는 기존 청년 마을기업이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 초과 등으로 청년회원 비율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함

○ 경상북도 시·군별 '청년조례'에 따른 「청년의 범위」 적용기준

연번	시군	근거 법령 또는 조례	청년의 범위	청년마을기업 청년회원 비율(%)	비고
1	포항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40%	
2	경주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40%	
3	김천시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40%	
4	안동시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40%	
5	구미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50%	
6	영주시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30%	
7	영천시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8	상주시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30%	
9	문경시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0	경산시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50%	
11	의성군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2	청송군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3	영양군	영양군 청년 기본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14	영덕군	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5	청도군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16	고령군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7	성주군	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18	칠곡군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40%	
19	예천군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20	봉화군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21	울진군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30%	
22	울릉군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30%	

※ 청년 마을기업 지역주민 및 청년회원 요건 충족 예시

- ① **경산시**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지역주민 비율 50% / 청년회원 비율 5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5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② **포항시**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지역주민 비율 50% / 청년회원 비율 4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2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4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③ **의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지역주민 비율 50% / 청년회원 비율 3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2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붙임 2]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아래 4가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출자금액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 (예시) 총 출자금 산출 :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 1천만원을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은 1억 1천만원이 됨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 출자금을 마을기업 자부담으로 출자할 수 있음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② 특수관계인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은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공공성** :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①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②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③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④ 마을기업의 설립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권장
-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질의> 마을기업의 임원이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 마을기업의 임원을 사퇴해야 하는지?

⇒ <답변> 별도의 사퇴 규정은 없으며, 법인 형태별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⑤항

*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규정 없음

3.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①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②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③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④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지역과 지역주민의 범위

※ 지역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 지역의 범위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민이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0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기준으로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확인을 통해 지역주민 여부 판단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예시) 경산시 진량읍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법인)가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산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지역주민으로 인정

※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 대의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5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최소 5인 이상 기준 적용)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인 → 5인)
 -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인 → 6인)
 - 10인 출자 시 지역주민 7인 이상

※ 마을기업 신청 단체(법인)는 ① 지역주민 최소 5인 이상 참여, ② 지역주민 70% 이상 참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기업성**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① 마을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써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등
- ③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지원 불가
※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에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질의>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상에 인건비 편성 & 집행이 없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붙임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공시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 - 66호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단체 및 법인이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혜택 적용

※ **경북도내 15개 시군이 해당**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구감소지역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군위군 ,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제3조(제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